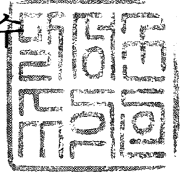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2090
번 호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이며,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용자 실적이 수년간 전무한 상태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용자 조례 폐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1. 21.~2. 10.)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